

부천시구및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6년 6월 8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6년 6월 8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·제127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(2006년 6월 14일)
상정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자치행정과장 박한권)

□ 제안이유

- 소사구 소사2택지 개발에 따른 괴안동 및 범박동 지역의 동간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,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소사본동·범박동 및 괴안동간 경계조정(안 별첨)
·소사 2택지개발 지역 중 공동주택지역은 소사본동으로, 단독주택 지역은 괴안동으로, 기존 소사본동 중 경계조정이 불합리한 일부구간은 범박동으로 조정

현 행		편입 동
지 역	규 모	
계	43,206㎡(13,092평)	43,206㎡(13,092평)
괴안동 151-5 일원	14필지 12,500㎡	소사본동
범박동 산16-3 일원	2필지 313㎡	
괴안동 산 13-6 일원	23필지 10,096㎡중 일부	범 박 동
소사본동 281-59 일원	2필지 11,166.1㎡	
소사본동 266-26 일원	3필지 20,498㎡중 일부	괴 안 동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○ 경계조정이나 편입 등 동간 구역 변경이나 번지를 지정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지 관계부서에서 임의로 하는지?	○ 현재 조정하고자 지역에는 주민이 없으며, 경계조정은 3개 동장, 사무장 시 관계부서와 합동 회의를 통해 한 것임.
○ 경계조정시 해당지역에 주택이 있으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지?	○ 동에서 주민의 의견과 실태조사를 거쳐서 시에 결과를 제출하면 이를 감안해서 개정하고 있음.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○ 없 음

나. 반대토론

○ 없 음

5. 심사결과

원안의결

6. 소수의견 요지

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없음

부천시구밋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518호
의결 년월일	2006. 6. 16 (제127회)

제출년월일 : 2006. 6. 8

제 출 자 : 부천시장

□ 제안이유

- 소사구 소사2택지 개발에 따른 괴안동 및 범박동 지역의 동 간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,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소사본동·범박동 및 괴안동간 경계조정(안 별첨)
 - 소사 2택지개발 지역 중 공동주택지역은 소사본동으로, 단독주택 지역은 괴안동으로, 기존 소사본동 중 경계조정이 불합리한 일부구간은 범박동으로 조정

현 행		편입 동
지 역	규 모	
계	43,206m ² (13,092평)	43,206m ² (13,092평)
괴안동 151-5 일원	14필지 12,500m ²	소사본동
범박동 산16-3 일원	2필지 313m ²	
괴안동 산 13-6 일원	23필지 10,096m ² 중 일부	범 박 동
소사본동 281-59 일원	2필지 11,166.1m ²	
소사본동 266-26 일원	3필지 20,498m ² 중 일부	괴 안 동

부천시구및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구및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부천시구및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”를 “부천시 구 및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중 “지방자치법”을 “「지방자치법」”으로 한다.

별표중 소사구의 소사본동란, 범박동란 및 괴안동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동 명	관 할 구 역
소사본동	소사본동 51~421, 산 28~산 79
범 박 동	범박동 1~158의3, 산1~산41
괴 안 동	괴안동 1~242의13, 산3~산185의36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·소		자치행정과
입 안 자	담당과장	박한권
	담당팀장	신한선
	담당자	송수호(320-2177)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		개 정 안		
부천시구및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 조례			부천시 구 및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		
[별 표]			[별 표]		
구 명	동 명	관할구역	구 명	동 명	관할구역
소 사 구	<u>소 사 본 동</u>	<u>소사본동 51~403 산 28~산79</u>	소 사 구	<u>소 사 본 동</u>	<u>소사본동 51~421 산 28~산79</u>
	<u>범박동</u>	<u>범박동 1~156의2 산1~산40의4</u>		<u>범박동</u>	<u>범박동 1~158의3 산1~산41</u>
	<u>괴안동</u>	<u>괴안동 1~211의4 산3~산185의36</u>		<u>괴안동</u>	<u>괴안동 1~242의13 산3~산185의36</u>

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6년 6월 8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6년 6월 8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·제127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(2006년 6월 14일)
상정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자치행정과장 박한권)

□ 제안이유

- 소사구 소사2택지 개발에 따른 괴안동 및 범박동 지역의 동간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,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소사본3동·범박동 및 괴안동간 경계 조정(안 별표)
·소사 2택지개발 지역 중 공동주택지역을 소사본3동으로, 단독주택 지역은 괴안동으로, 기존 소사본3동 중 경계조정이 불합리한 구간은 범박동으로 조정

현 행		편입 동
지 역	규 모	
계	43,206㎡(13,092평)	43,206㎡(13,092평)
괴안동 151-5 일원	14필지 12,500㎡	소사본3동
범박동 산16-3 일원	2필지 313㎡	
괴안동 산 13-6 일원	23필지 10,096㎡중 일부	범 박 동
소사본동 281-59 일원	2필지 11,166.1㎡	괴 안 동
소사본동 266-26 일원	3필지 20,498㎡중 일부	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○ 없 음	○ 없 음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○ 없 음

나. 반대토론

○ 없 음

5. 심사결과

○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 요지

○ 없 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 음